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78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이강일 · 양부남 · 김현정
이성윤 · 김남근 · 한정애
허성무 · 채현일 · 장철민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3제4항 중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1. 임직원에게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 분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 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 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 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 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 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 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④ ----- -----취득(자기주식 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 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한다)하는----- ----- -----.
<신 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 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분 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 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u>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u> <u>기 위한 경우</u> 2. <u>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u> <u>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